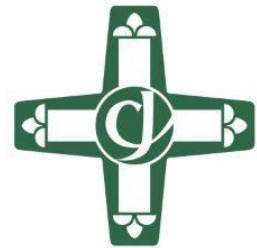


세이프가딩 정책

2026



**Congregatio
Jesu**

목차

사명 선언문.....	4
서문.....	4
세이프가딩에 대한 약속.....	4
세이프가딩을 위한 표준 기반 접근	4
세이프가딩 정책 표준	5
표준 1: 세이프가딩이란 무엇인가.....	5
누가 가장 세이프가딩을 필요로 하는가?	5
중요한 정의.....	5
세이프가딩에 대한 약속.....	6
세이프가딩의 구성 및 역할	7
총장.....	7
관구장/지역장.....	7
수도회 세이프가딩 담당자.....	8
관구/지역 세이프가딩 담당자.....	8
관구/지역 세이프가딩 팀.....	9
세이프가딩 팀 구성원	9
관구/지역 위험 평가 관리팀	10
표준 2: 안전, 보호 및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11
표준 3: 우려 사항 및 혐의에 대한 대응.....	14
우려 사항의 정의.....	14
혐의의 정의.....	14
의무 신고의 정의	15
혐의를 제보한 사람에게 대응하기.....	16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이 학대를 신고할 때의 일반 원칙.....	17
혐의 조사 절차	18
피의자가 CJ 회원인 경우:.....	19
표준 4: 피해 생존자에 대한 대응 및 돌봄	19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
우리는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요?.....	20
피해 생존자와 동반 하기.....	21
표준 5: 피고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	21



지원 담당자의 역할과 임무	22
피의자를 위한 안전 계획	22
혐의 신고	22
혐의 신고 후의 절차	23
표준 6: 세이프가딩 교육	24
누가 세이프가딩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24
<i>모든 사람</i>	오류! 북마크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세이프가딩 교육	24
표준 7: 용어집 및 양식	26
학대의 유형	26
행동 강령	29
수도회 행동 강령 예시	29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과 접촉하는 성인을 위한 행동 강령 예시	30
위험 평가 예시	31
안전 계획.....	35
지원 담당자의 역할	37
피의자 종교인에 대한 지원 담당자의 역할	37
지원 담당자.....	37
지원 담당자의 자격	37
지원 담당자의 임무.....	38
지원 담당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업무.....	38
지원 담당자 역할의 종료.....	39
다른 수도회에서 온 수녀/수련자/양성 중인 자에 대한 고려 사항.....	39
사진 촬영 동의서	40
세이프가딩 정책 준수 서약서.....	40
용어해설	41
피해 생존자를 위한 안내문 작성 양식	51
피의자 사건 관리 체크리스트	52



사명 선언문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며, 태생적으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수도회(Congregatio Jesu)는 수도회 내 모든 수준은 물론, 그 밖의 모든 관계에서 안전하고 지지적이며 배려 넘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 그 이행을 촉진하며, 회원들의 교육을 보장하고, 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 및 갱신할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서문

이 문서는 수도회의 세이프가딩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각 관구와 지역의 민법, 사목 활동 및 문화적 맥락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 가지 표준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수도회에서의 삶과 사목 활동에 있어 보편적인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이프가딩에 대한 약속

이 정책의 목적은 예수수도회(Congregatio Jesu)의 사목 활동과 공동체 생활 속에서 안전, 보호 및 예방의 환경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이든 성인이든 취약한 대상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성적, 정서적, 영적 학대 또는 기타 형태의 권력 남용—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이 정책에 명시된 민법 및 교회법의 전문적 표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 세계 예수수도회(Congregatio Jesu)의 모든 회원은 물론 우리와 협력하는 모든 이들은 이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동료 인간, 특히 취약한 이들을 대할 때 자신의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이프가딩을 위한 표준 기반 접근 (A Standard Approach to Safeguarding)

세이프가딩 표준 기반 접근은 세이프가딩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식으로, 명확한 책임 체계를 제공하고 모든 수준에서 세이프가딩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세이프가딩 조치의 이행에 대한 전문적인 감사(professional audit)도 이 표준 접근 방식에 기반합니다.



세이프가딩 정책 표준 (Safeguarding Policy Standards)

표준 1	세이프가딩이란 무엇인가
표준 2	안전, 보호 및 예방 문화 조성
표준 3	우려 사항 및 제보에 대한 대응
표준 4	피해 생존자에 대한 대응 및 돌봄
표준 5	피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표준 6	세이프가딩 교육 및 감사
표준 7	용어집 및 양식

표준 1: 세이프가딩이란 무엇인가

“세이프가딩 (safeguarding)”이라는 용어는 “아동 보호 (child protection)”와 “아동 세이프가딩(child safeguarding)”를 대체합니다. 이는 아동과 취약한 성인 모두에게 최상의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학대 예방을 포함하는 점에 대해 공통적이고 국제적인 이해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세이프가딩은 교회와 사회가 협력하여 언제나 동일한 수준의 보살핌, 보호 및 예방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누가 가장 세이프가딩을 필요로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세이프가딩이 필요합니다. 교구 내 모든 구성원은 사역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구/지역 정책은 기관 및 사역 내 뿐만 아니라 해당 관구/지역 내 각 공동체의 일상생활에서도 세이프가딩이 어떻게 이행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성원의 초기 양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정의

아동: 교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NDRCⁱ

취약한 성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핍, 또는 신체의 자유 박탈 상태에 있어, 실제로는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범죄를 이해하거나, 범죄를 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에 저항할 능력이 제한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VELM 2023ⁱⁱ



일시적인 취약성이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취약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준의 적절한 배려와 고려가 주어져야 합니다. 일시적인 취약성의 상황에는 사별, 질병, 실업 등이 포함됩니다ⁱⁱⁱ

세이프가딩에 대한 약속



책임: 교구 구성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모든 세이프가딩 관련 사안에 있어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보호: 교구 구성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언제나 보호 문화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힘의 회복: 관련된 모든 사람은 아동 청소년 및 취약 계층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방: 모든 활동과 담당 인력은 학대 예방을 핵심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적정성: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며, 특히 아동 청소년 및 취약 계층을 우선시합니다.

협력: 모든 협력 활동에서 본회,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모든 활동에 세이프가딩의 중요성이 스며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세이프가딩의 구성 및 역할

총장

➤ 책임

- 수도회 전체의 세이프가딩 활동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모든 형태의 학대에 대한 돌봄, 보호 및 예방 분야에서 모범적인 실천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 지도자 협의회 (Leadership Council) 내부의 세이프가딩 담당자를 임명한다
- 총원에 보고된 모든 혐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 피해 생존자들이 따뜻하게 환영받고 그들의 목소리가 경청되도록 보장한다
- 피의자 사건 처리에 있어 관구장 및 지역장, 그리고 각 관할 구역의 세이프가딩 담당자를 지원한다
- 이사회와 협의하여 주 또는 지역 세이프가딩 담당관을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

➤ 통보받아야 할 내용들 (Has to be informed)

- 관구장/지역장 (Provincial/Regional) 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것 (표준 3 및 5 참조)
- 모든 종류의 혐의에 대한 것 (About any allegation)
- 해당 관구/지역에서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례(case)에 대한 것
- 수도회의 명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것

관구장/지역장

- 관구/지역 전체의 세이프가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모든 형태의 학대 예방, 보호 및 대응에 있어 모범적인 실천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 (지도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세이프가딩 담당자를 임명한다
- 세이프가딩 담당자와 수시로 소통하며 그 업무를 지원한다
- 세이프가딩 팀과 위험 평가 관리 팀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 전 세계 수도회 차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세이프가딩 책임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보장한다
- 관할 관구/지역 내 모든 혐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 피해 생존자들이 따뜻하게 환영받고 그들의 목소리가 경청되도록 보장한다
- 모든 형사 혐의 또는 기타 중대한 세이프가딩 관련 사안을 총원 총장 및 지정된 세이프가딩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관구/지역의 세이프가딩 현황에 대해 매년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수도회 세이프가딩 담당자 (The Congregational Safeguarding Lead)

세이프가딩 담당자는 총장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책을 두는 목적 (Purpose of the role)

- 수도회 전체의 보호 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 수도회 전체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 모범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 정보에 정통하고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요 직무 및 전문 업무

- 관구/지역 장 및 그들의 세이프가딩 담당자를 지원하고, 안전 계획 수립 및 예비 조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줌
- 조언 및 모범 사례 제공
- 지도부(Leadership Team)가 수도회 전체의 세이프가딩 현황을 최신 상태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
- 수도회 전체의 세이프가딩 감사(audit)를 주도

보고

- 필요에 따라 총장에게 직접 보고함
- 연간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교육

- 수도회 전체에서 제공되는 교육에 대한 감독을 수행
- 세이프가딩 교육이 구체적인 역할과 상황에 맞춰 일관된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
- 자신의 특정 역할에 대한 정기 교육에 참석하며, 여기에는 국제적 동향 파악도 포함됨

관구/지역 세이프가딩 담당자

- 관구/지역의 세이프가딩 담당자는 관구장 및 지역장, 수도회 세이프가딩 담당자에게 보고 책임을 갖는다.
- 해당 직무에 대한 필수 5일간의 대면 교육, 초기 교육 및 기타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직책을 두는 목적

- 주/지역 전역의 모든 세이프가딩 실무를 감독하기
- 모범 사례의 확립 및 세이프가딩 정책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 관구/지역 내 누구에게나 정보에 정통하고 전문적인 자원이 되기 위해.



주요 직무 및 전문 업무

- 관구장/지역장이 안전 계획 수립 (Safety Plans) 및 예비 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s)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조언 및 모범 사례를 제공
- 세이프가딩 팀이관구/지역 전반의 세이프가딩 현황 및 국제적 동향을 최신 상태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
- 관구/지역 세이프가딩 감사 업무를 주도함
-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함
- 외부 전문 감독관과 함께 의무적인 전문 감독 회의에 참석
- 본회 내 다른 아동·청소년 세이프가딩 담당자 및 본회 세이프가딩 책임자와 원활한 업무 소통을 보장함

보고

- 필요에 따라 관구장/지역장에게 직접 보고
- 행동 계획, 미해결 사례 및 세이프가딩 교육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분기별 서면 보고서를 제출

교육

- 관구/지역 전반에 걸쳐 제공되는 교육을 총괄
- 세이프가딩 교육이 특정 역할과 상황에 부합하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
- 자신의 특정 역할에 대한 정기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제적 동향 파악도 포함됨.
12개월 기간 동안 수도회 회원 및 기타 관계자(적절한 경우)가 이수한 세이프가딩 교육 기록을 관리함.
양질의 세이프가딩 교육을 보장.

관구/지역 세이프가딩 팀

주요 업무

- 세이프가딩 담당자가 결코 혼자 일하지 않도록 보장함
- 전문적인 조언과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세이프가딩 담당자를 지원

세이프가딩 팀의 구성원

(세이프가딩 팀이 가진 자문적 역할을 고려할 때, 관구장이나 지역장이 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세이프가딩 담당자 (필수)
- 세이프가딩 전문가 (필수)
- 법률 분야 전문가 (필수)
- 교회법 전문 지식 보유자 (필수)
- 심리학 배경을 가진 전문가 (필수)
- 적절한 경우, 의학 또는 교육 배경을 가진 사람이나 특정 맥락과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관구/지역 위험 평가 관리 팀 (Risk Assessment Management Team)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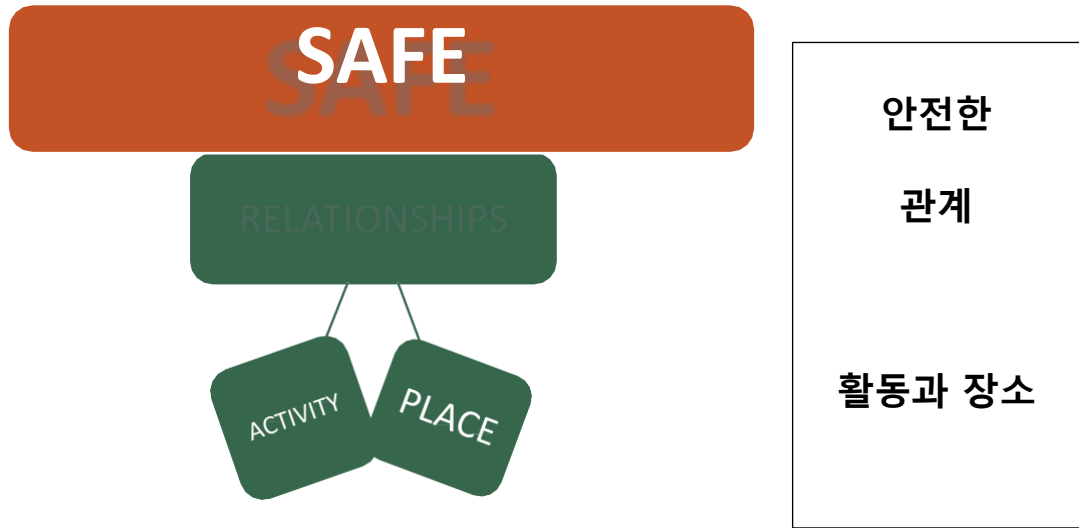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세이프가딩 담당자와 세이프가딩 팀 소속 위원 3명
- *위험 관리 팀이 가진 자문적 역할을 고려할 때, 관구장이나 지역장이 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목적

- 제기된 우려 사항과 혐의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하기 위함
-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혐의를 법정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보장하기 위함
- 모든 혐의를 총장 및 수도회 세이프가딩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보장
- 관구/지역이 피해 생존자들에게 자비로운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기록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
- 일부 관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함
- 세이프가딩 담당자 및 관구/지역 장상에게 피해 생존자를 위한 안전 계획 및 돌봄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
- 피고인에 대한 전문적인 사건 관리를 보장하기 위함.
- 피의자에 대한 안전 계획의 이행 및 정기적인 검토를 보장하기 위함
- 언론에 제출할 성명서가 작성되도록 하기 위함



표준 2: 보호와 예방을 위한 안전한 문화 조성



“온전히 하느님께 속하고,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주셨거나 당신의 책임으로 맡기신 모든 이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십시오.”

메리 워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오늘날, 사회적 불균형과 기본권의 침해, 온갖 종류의 학대가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무관심과 불안, 이기심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회칙 『딜렉시트 노스(Dilexit nos)』에서 “주님의 사랑의 여러 측면”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소망을 밝히며, “마치 마음을 잃어버린 듯한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집인 바로 이 세상에서 도움의 외침과 희망에 대한 갈망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역사 속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수도회(Congregatio Jesu)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소를 환영하며,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온갖 학대를 예방하는 ‘마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안전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되며, 보호는 오직 사랑 안에서만 진실하고 효과적이며, 예방은 살아 움직이며 자신을 내어주는 심장(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학대는 결코 근절될 수 없겠지만, 예방과 보호 조치는 우리의 책임이며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관계 RELATIONSHIPS

- 개인적인 평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견고한 전문적 절차를 통해, 수도회에 입회하는 회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적합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함으로써.
- 문화적 맥락, 민법 및 각 개인의 사역에 적합한 행동 강령을 따르며, 수도회 모든 구성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이를 수락하고 존중하며 따를 것을 서명(sign)해야 합니다. (행동 강령의 예시는 표준 7항 참조).
- 안전한 관계는 건전하고 건강한 경계 안에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경계에는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신체적, 언어적 의사소통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안전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서 (해당 역할에 맞는)
- 추천서
- 건강 검진 (필요한 경우)
- 심리 평가 (필요한 경우)
- 범죄 경력 조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초기 세이프가딩 교육
- 자기 인증 진술서 (Self-certification statement)
- 세이프가딩 정책에 대한 서명 (Signing the safeguarding policy)
- 행동 강령에 대한 서명 (Signing the Code of Conduct)

안전한 활동과 장소 AND PLACES

장소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는 수행되는 활동이나 업무의 유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 사항과도 연결됩니다. (위험 평가 핸드북 템플릿 참조)



따라서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활동과 관련하여	장소에 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또는 취약한 성인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승인/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진 촬영 동의서 - 계획된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 적절한 경우 건강 상태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 - 활동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 - 지도자와 아동 및/또는 취약한 성인 간의 관계를 적절히 조성 - 비상 연락처 - 필요에 따라 해당 활동에 배정된 남녀 불문의 세이프가딩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 결과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 시설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 실제로 존재하는 또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시설의 보안 부족(일시적인 경우 포함)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 기록부에 기록하고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교인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도 어린이나 취약한 성인을 데려올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험 평가는 모든 형태의 피해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며 학대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므로, 세이프가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기록 관리는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고 직전 상황 (Near-Miss)” 역시 해당 상황이 적시에 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와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활동에 대한 위험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에는 수도자 양성을 위한 생활교육공간 (Formation Houses) 및 요양원/간호 시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준

7 참조)

표준 3: 우려 사항 및 혐의에 대한 대응

아동 및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 혐의 처리 원칙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으며 타고난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종종 그 실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의 메시지와 국제 인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마태오 복음 7:12] 그리고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 오늘날 아동과 취약한 성인의 권리는 인정되고, 확증되며, 보호되어야 합니다.

예수수도회(Congregatio Jesu)는 우리 사목 활동의 모든 현장과 우리 공동체 내에서 모든 이의 복지를 위해 투명성과 책임감의 문화, 그리고 안전한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수수도회(Congregatio Jesu)는 회원, 협력자, 양육자, 학생 등이 제기하거나 보고한 모든 혐의 및 내부 고발 사안에 대해 이를 보고하고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려 사항의 정의

‘우려 사항’이란 누군가가 목격하거나, 듣거나, 전해 들은 내용 중 아동, 청소년 및 취약 계층에게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이프가딩 관련 우려 사항은 또한 아동이나 성인의 안전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정서적, 영적 측면에서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려 사항은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변명을 대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려 사항을 무시할 경우 그 영향이 누적되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려 사항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조언을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혐의의 정의

‘혐의’란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에게 실제적 또는 잠재적 피해를 입힌, 일대일 또는 집단 형태의 학대 행위 및 학대적 행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온라인 접촉이나 비접촉 (non-contact) 방식이 포함됩니다.

세이프가딩 관련 혐의는 또한 아동이나 성인의 안전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혐의는 형사적 또는 비형사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성격을 띤 혐의는 의무 신고 요건에 따라 법정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혐의가 형사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에 대한 성적 학대는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영적 학대는 아직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피해와 고통을 초래합니다. 한 가지 형태의 학대가 발생하면 종종 다른 형태의 학대도 동반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에 대한 성적 학대에는 종종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포함되며, 교회 내에서 발생할 경우 영적 학대도 수반됩니다.

의무 신고 (Mandatory Reporting)의 정의

이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어떤 체계와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경찰이나 기타 법정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의무 신고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민사상의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주/지방)의 보호 정책에는 의무 신고가 어떻게 완전히 준수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Vos estis lux mundi』에 명시된 중요 사항: “제3조 – 보고

§1. 성직자가 내부 포럼에서 사목 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성직자나 봉헌 생활회 또는 사도 생활회의 회원이 제1조에 언급된 행위 중 하나가 저질러졌음을 알게 되거나, 이를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조에 언급된 행위 중 하나가 저질러졌음을 알게 되거나, 이를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인물은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의 관구장이나 교회법(CIC) 제134조 및 동방교회법(CCEO) 제984조에 언급된 다른 관구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

§2. 누구든지, 특히 교회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목 활동을 하는 평신도는, 전조에서 언급한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통해 제1조에 언급된 행위 중 하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VELM 2023)

학대 발생 시기

학대는 현재 진행 중인 경우, 최근에 발생한 경우, 또는 경우에 따라 성인이 어린 시절 겪었던 성적 학대나 기타 학대를 스스로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학대 혐의는 본 보호 정책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최근이나 현재 발생하지 않은 학대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로는 “과거의”, “비 최근의” 또는 “과거의” 등이 있습니다.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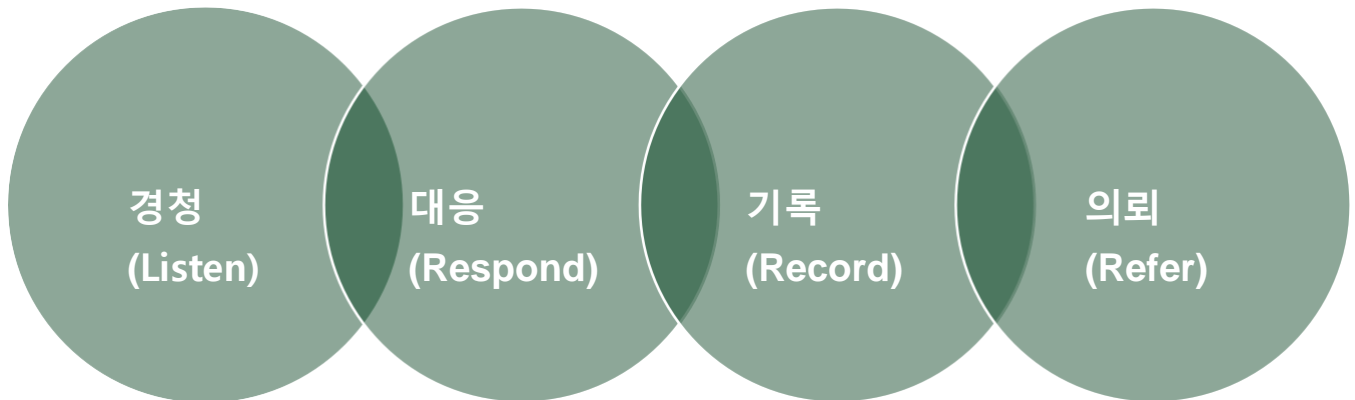
지역별 법률 및 문화적 차이가 있더라도, 누구와 함께 일할 때든 적절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경계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수도회(Congregatio Jesu)는 다음을 통해 아동 및 취약한 성인의 보호와 안전에 전념합니다:

- 회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세이프가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 (raising)
- 접촉 (touch) 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
- 학대 혐의에 대처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 수립
- 적절한 채용 정책과 더불어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
- 서명된 행동 강령 및 모범 사례 지침 준수

혐의에 대한 대응

모든 혐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정된 법정 기관과 임명된 세이프가딩 담당자 및/또는 관구/지역 장상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대응 및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하는 명확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아래 참조). 세이프가딩 담당자는 전 과정에 걸쳐 항상 자신의 세이프가딩 팀과 상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제보한 사람에게 대응하기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이 학대를 신고할 때의 일반 원칙:

경청:

- 스스로 침착하고 상대를 안심시켜 주십시오
-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휴대폰 전원을 끄십시오
-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인정해 주며, 판단을 내리거나 정보를 경시하지 말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 제기된 학대 의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 마음과 귀로 경청하십시오 -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세심하게 귀 기울이십시오

대응:

- 신고하는 사람과 본인 모두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경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Do not be afraid of silence)
-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안심시켜 주십시오
- 상대방에게 들은 이야기를 믿고 있다고 전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라고 말하십시오
- 그 사람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보를 강요하거나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말을 끊지 마십시오. 들은 내용을 확실히 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한 질문을 하십시오
-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추측하거나 가정하지 마십시오
-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상대방이 확실히 알도록 하십시오. 완전한 비밀 유지를 약속하거나 허위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줄 것임을 그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 당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록:

- 기억이 생생할 때 들은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십시오. 대화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밝혀진 사건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십시오.
- 사용된 정확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 조사하지 말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알리거나 질문하거나 대립하지 마십시오.
- 질문받은 내용 중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요청받은 정보를 알아보겠다고 말하십시오.

의뢰:

- 지체 없이 이 사안을 관할 당국에 즉시 알리십시오.
- 세이프가딩 담당자, 주/지역 세이프가딩 책임자 및 교구 세이프가딩 책임자에게 알리십시오.
- 세이프가딩 담당자가 해당 혐의를 직접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딩 담당자에게 메모를 전달하십시오.

혐의 조사 절차

해당 국가 및 상황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하십시오.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지침과 민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규정된 혐의 조사 절차(민법 및 관련 주교회의의 지침)에 따라 현지 관행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모든 혐의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조사되어야 합니다
- CJ 수도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모든 혐의는 관구장/지역장, 관구/지역 세이프가딩 담당자 및 수도회 보호 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 관구장/지역장 수녀와 관련된 모든 혐의는 긴급히 총장 수녀와 수도회 세이프가딩 담당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 법적 의무에 따라 민사 당국에 혐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피고소인 모두의 권리, 명예 및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CJ 회원, 평신도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형사적 혐의가 제기된 경우, 관구장/지역장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인물이 사목 활동이나 업무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 관구장/지역 장은 교회법적 조사 (Canonical Investigation)을 개시하되, 민사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언론 성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 주/지역 보험사에 통보하십시오

피의자가 CJ 회원인 경우:

- 혐의가 조사되는 동안 해당 수녀에게 사목 직무에서 물러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인 회원이 다른 공동체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주지는 해당 수녀와 상의한 후 관구장/지역장이 결정합니다
-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발언도 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정확한 기록 관리는 필수적이며 중요합니다.
- 무죄가 입증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 상처, 또는 부당함에 대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표준 4: 피해 생존자에 대한 대응 및 돌봄

가톨릭 교회는 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세심한 보호 의무를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나서서 고발을 할 때, 그들은 종종 큰 용기를 내며, 또한 어떤 반응을 받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구성원, 직원, 자원봉사자 및 기타 관계자들은 피해 생존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 생존자가 본회 회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직무 및 사목 활동 수행 중 저지른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경우, 본회는 더욱 큰 보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수수도회 (Congregatio Jesu)는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보장합니다. ‘피해자’와 ‘생존자’라는 용어는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종종 혼용됩니다. 일부 피해자나 생존자는 자신이 원하는 용어를 선택하거나, 아예 어떤 용어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세이프가딩(safeguarding) 분야에서 ‘피해자(victim)’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교회나 기타 상황에서 학대를 당한 사람(아동 또는 성인)을 의미합니다.



'생존자(Survivor)'라는 용어는 학대를 당했으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부르기를 원치 않는 일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때로 그들이 겪는 여정 속에서 자기 주도적 회복과 치유를 추구하는 마음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우리는 존중과 배려로 대응하며, 경청하고 믿습니다
- 경청 - 대응 - 기록 - 의뢰
-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며 대응합니다
- 안전한 공간/장소를 조성합니다.
- 연민을 담아 대응합니다
-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표준 3: 우려 사항 및 혐의에 대한 대응 참조)

우리는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요?

- 경청
- 안심시키기
- 치료 (Therapy)
- 영적 동반/지원/지도
-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지원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또는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 기타 지역 기관

또한 본회 사목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 중에는 과거에 학대를 당한 생존자들도 있을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을 '타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교회 내에서 갱신과 치유,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걷는 존재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이차적 외상(Secondary Trauma)을 겪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iv}

(피해생존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3표준에서 언급하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피해생존자 (Victim Survivors) 와 동반 하기

- 이는 수도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나 기타 형태의 심리적 지원과는 다릅니다.
- 동행은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함께 걸어가는 장기적인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사목적 역량과 함께 트라우마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인 훈련이 모두 필요합니다.
- 피해자를 동반하는 이들에게는 전문적인 슈퍼비전이 필수적입니다.
- 동행 과정은 반드시 피해 생존자 중심이어야 합니다.
- 피해 생존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 이러한 필요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의 (Justice, 다양한 형태의)
 - 금전적 보상
 - 사과
 - 자신의 목소리가 경청되는 것
 -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것
 - 치료/상담
 - 의료적 조치
 - 민사 또는 교회법상 조사 결과 알 권리
 -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알 권리
 - 이미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어디에 안장되었는지
 - 피해 생존자와 동행자 간에 동행 과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표준 5: 피고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

피의자는 수사 전, 수사 중 및 수사 후에 보살핌과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아동 및/또는 취약한 성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에서 격리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혐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또한 피 고발인이 CI 수도자인 경우, 그는 대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퇴거되어야 합니다. 피 고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피 고발인의 관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 계획을 합의하고 서명하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표준 7의 '사건 관리 체크리스트'에 더 자세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 담당자의 역할과 임무:

각 피 고발인에 대한 지원 담당자의 지명은 피 고발인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이는 관구장/지역장 및 세이프가딩 담당자가 혐의에 대한 후속 조치와 피해 생존자에 대한 보살핌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담당자는 관구장/지역장이 임명합니다.

지원 담당자의 자질과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준 7, “지원 담당자의 역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위한 안전 계획:

안전 계획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피 고발인과 관구장/지역장 간의 서명된 합의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피 고발인에게 부과되는 제한 사항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 고발인이 거주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할 장소,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복장 규정도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 고발인이 안전 계획에 서명하기를 거부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관구장/지역장의 명령에 의해 강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표준 7에 양식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혐의 신고

누가 혐의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주목해야 할 점은, 혐의 제기가 반드시 피해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혐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지역 당국에 접수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 피해자의 친척이나 친구
- 제3자
- 경찰
- 자신이 들은 내용이나 목격한 사실을 보고하는 동료 수도자
- 다른 종교인
- 기타

혐의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혐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전화
- 이메일
- 익명 서신



혐의 신고 후의 절차:

해당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관할 관구장/지역장에게 보고 됩니다
세이프가딩 담당자에게 통보됩니다 - 아직 담당자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
관할 관구장/지역장은 예비 평가 ^v 를 완료 ^한 후, 해당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법정 당국에 보고하며, 이에 따라 민사 조사가 시작됩니다
관할 관구장/지역장은 총장 및 보호 담당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총장 및 보호 담당 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관할 관구장/지역장 및 세이프가딩 담당자를 지원합니다.
관구장/지역장은 피의자가 사목 활동과 공동체에서 물러나도록 보장하며, 이 경우 피의자는 아동 및/또는 취약한 성인들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게 됩니다.
관구장/지역장은 해당 지역 주교에게 통보합니다. 우선 정보 제공을 위해 알려야 하며, 피의자가 교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추가로 알립니다.
관구장/지역장은 필요에 따라 관구/지역 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신중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소통합니다.
관구장/지역장은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수도자가 거주하게 될 공동체의 장과 면담합니다.
관구장/지역장은 예비 조사를 개시하며, 조사관을 임명하는 교회법적 칙령을 발령합니다.
교회법상 조사를 시작하되, 민사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중단됩니다. 법적/민사 조사가 완료되면 예비 조사가 진행됩니다.



표준 6: 세이프가딩 교육

아동 및 취약 계층을 학대와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딩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실제 또는 잠재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교육은 조직의 신뢰성, 신빙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가 세이프가딩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모든 사람:

아동 및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특정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므로, 세이프가딩 교육은 조직 내 모든 구성원에게 필수적입니다. 모든 회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세이프가딩 교육을 받으면 학대나 방임의 징후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우려 사항을 신고하는 올바른 절차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적 지식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개입을 보장하며, 피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은 지역 사회 내 신뢰를 구축하고, 안전과 복지에 대한 본회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세이프가딩 교육

예수수도회의 구성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는 필수입니다

권장 세이프가딩 교육 내용

다음은 세이프가딩에 대한 탄탄한 기초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모듈을 소개합니다.

모듈 1: 세이프가딩 개론

- 기본 규칙과 안전한 환경 조성
- 개회 기도
- 아동 및 취약 성인 보호의 의미 탐구
- 아동 및 취약 성인의 정의
- 주요 학대 유형
- 기타 학대 형태
- 의혹 및 우려 사항에 대한 대응 방법
- 의무 신고
- 사례 시나리오 및 토론



모듈 2: 보호 및 예방 문화 조성

- 위험 이해 및 관리
- 위험 평가란 무엇인가?
- 안전한 관계/장소/활동 조성
- 주장 및 우려 사항에 대한 대응
- 피해 생존자에 대한 대응
- 피해 생존자에 대한 돌봄 및 지원
- 피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사례 시나리오: 예방 및 보호

기타 보호 관련 내용으로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대의 징후와 지표
- 아동 및 성인 피해자에 대한 대응 방법
- 영적 학대, 양심의 학대
- 경계, 조종 및 그루밍
- 소셜 미디어의 안전한 사용

기타 교육:

- 양성 교육
- 지도자 역할을 맡은 이들을 위한 세이프가딩 교육
- 전문직 역할
- 세이프가딩 담당자를 위한 정기 교육 진행 중
- 세이프가딩 감사 수행 방법 교육
- 기타 유형의 학대
- 영적 학대 및 양심의 학대
- 기록 관리



표준 7: 용어집 및 양식^{vi}

학대의 유형

학대와 착취의 유형

학대는 부당한 대우의 한 형태이며, 타인에 의해 가해지거나 스스로에게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학대는 가정, 교육 현장 또는 어떤 물리적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나 게임 앱과 같은 온라인 또는 가상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대개는 청소년이나 취약한 성인(위험에 처한 성인)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청소년이나 취약한 성인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종종 친구가 되거나 친구 및 동료들의 존경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루밍(grooming) 행동입니다. 학대는 어떤 관계에서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공동체, 문화 또는 종교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착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심리적 학대: 개인의 정서적 학대가 지속되어 그 사람의 안녕이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모든 유형의 학대에는 어느 정도의 정서적 학대가 수반되지만, 정서적 학대만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체적 학대: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예: 때리기, 밀치기, 폭행). 신체적 학대는 중독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는 등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행위입니다 (It is an intentional act).

성적 학대: 당사자가 원하지 않거나,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해 능력이 없거나, 강압에 의해 성적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 성폭행, 부적절한 신체 접촉 또는 노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선물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형태의 성적 착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는 전자 기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적 학대: 영적 학대는 정서적·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종교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강압 및 통제 행태를 특징으로 하며, *“타인의 종교적 신념과 믿음을 악용하여 해를 가하는 학대”*를 의미합니다. 영적 학대는 교회 내에서 영적 권위와 신뢰를 가진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학대를 가할 때 이차적인 학대 경험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권력 남용: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권위를 가진 자들이 타인의 존엄성과 자율성, 자유 및 책임을 존중하지 않고, 특히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고방식, 이해관계 및 의지를 강요함으로써 드러납니다. 때로는 관계의 투명성 결여와 정서적 협박을 통해 타인을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이용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양심의 학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조작자가 자신의 이익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속이는 형태를 띠며, 타인의 판단과 분별력, 혹은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의식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임/부작위 (Neglect/Act of Omission): 아동이나 청소년의 기본적인 신체적·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성장이나 발달을 손상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해악을 예방하지 못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아동 간(동료 간) 학대: 아동과 청소년 또한 다른 아동을 학대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괴롭힘,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온라인 문제, 청소년이 제작한 성적 이미지 등을 통해 발생합니다.

괴롭힘: 위협적, 공격적, 위압적, 학대적, 모욕적, 불쾌한, 잔인한, 보복적인, 굴욕적인,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이는 청소년 간, 성인 간,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나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괴롭힘 또는 사이버 괴롭힘: 소셜 미디어, 게임, 휴대폰 등을 통해 발생합니다. 모욕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당황스러운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섹스팅(청소년이 제작한 성적 이미지 포함):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나체 또는 반나체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이러한 이미지를 소지, 공유 또는 유포하는 것은 많은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성인이 다른 성인의 성적 이미지를 게시하는 행위 역시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개인의 기분이나 정신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변질시키는 행동 패턴입니다.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해 또는 자기 방임: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자해는 주로 청소년들이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채택하는 대처 전략입니다. 자기 방임은 개인 위생, 건강 또는 환경 등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중독: 특정 행동(알코올, 약물, 도박 등)을 멈출 수 없는 상태로, 대인관계, 건강, 재정,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종종 다른 문제와 동반되며, 이를 통해 개인은 강압이나 정신 건강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착취:

- **성적 착취:** 권력, 금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을 어떤 형태의 성적 활동으로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대적 노예제 / 인신매매:** 강제 노동, 가사 노역, 강압, 기만 또는 개인을 학대/노예 생활(예: 성매매, 마약 밀매)로 내모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갱:** 명확한 지도부와 내부 조직을 갖춘 (연령 불문) 집단으로, 지역사회 내 특정 구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거나 통제권을 주장하며,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카운티 라인(County Lines):** 도시의 마약 조직이 소규모 마을로 활동 영역을 확장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종종 폭력을 동원해 지역 마약 판매상을 몰아내고,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해한 전통 관행

- **강제 결혼:** 본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강요당하는 경우로, 이를 위해 폭력이나 위협을 수단으로 삼아 강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관행은 많은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 **여성 생식기 절제 (여성할례):** 의학적 이유가 없고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여성 생식기를 의도적으로 변형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시술을 말합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며 보통은 불법입니다.
- **명예에 기반한 폭력:** 가족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수호하기 위해 사건이나 범죄가 저질러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정(관계) 내 학대:**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폭력을 말합니다. 이는 학대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행동 양식으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2018년부터는 스토킹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또한 강압적인 행동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학대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학대: “개인의 돈, 재산 또는 자원을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도, 사기, 위조, 횡령, 유연장 강제 변경, 거주자의 의사결정권 부적절한 박탈, 대리권 남용 등은 모두 재정적 학대 또는 착취의 형태입니다.”^{vii}

차별: 인종, 성별, 젠더, 연령, 장애, 종교 또는 신념, 성적 취향(sexual preference), 외모 또는 문화적 배경, 임신 및 출산, 결혼 또는 시민 파트너십과 같은 차이 때문에 누군가가 표적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조직적/제도적 학대: 조직이 아동이나 취약 성인에 대한 반복적인 학대, 학대 행위 또는 방임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정신적 웰빙: 정신적 웰빙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생산적으로 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정신 건강 상태가 좋거나 나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증상의 심각성, 재발 빈도, 일시적인 위기 상황 또는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상태 등 그 양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일부 개인은 불안 발작 (anxiety attack), 자해 또는 자살 충동과 같이 잠재적으로 해로운 대처 전략을 개발함에 따라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약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

수도회 행동 강령 예시

- 저는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대우받고, 어떠한 형태의 학대, 괴롭힘, 또는 성희롱도 용납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저는 제 지위와 권력, 권한을 신중하고 겸손하게 사용하여 우리 수도회가 모든 수도자가 존중받고 보살핌을 받는 안전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저는 제 책임감을 제 보호 아래 있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그들을 이용하거나 착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저는 모든 직위, 신분, 인종, 종교, 민족,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정직하게 대할 것입니다.
- 저는 모든 관계에서 부적절하고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배제하고 제 경계를 지킬 것입니다.
- 미성년자나 취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의 알려진 사례나 의심되는 사례를 관련 당국에 신고하겠습니다.
- 저는 어떤 형태의 학대라도 신고하는 분들을, 도움을 구하는 분에게 힘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저는 기밀을 적절히 유지하고 준수할 것이며, 이는 제가 공유할 권한이 없는 정보는 어떠한 것이든 비밀로 유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 저는 제가 책임지거나 관리하는 자금이 의도된 목적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며, 이에 따라 투명하고 적절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니다.
- 이 보호 정책은 우리 현장과 교회의 가르침에 명시된 복음적 이상, 카리스마 및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과 접촉하는 성인을 위한 행동 강령 예시

당신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우리 수도회의 카리스마, 원칙, 지침 및 모든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행동합니다.
-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 아동, 청소년 및 보호가 필요한 성인들과 적절하게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맞서고, 타인이 따르기를 바라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괴롭힘, 부적절한 고함 (inappropriate shouting), 또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허용되는 환경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 각 개인의 신성한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 권리를 존중하십시오
- 어린이 및 청소년과 민감한 주제를 논의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십시오. 예를 들어,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십시오
- 어린이 및 청소년과의 관계를 훼손하거나 신뢰 관계 내에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은 피하십시오. 이 규칙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와 같은 모든 행동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을 만날 때는 개방적이고 주위의 시선이 닿는 장소에서 만나십시오
- 말과 행동이 오해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 학대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신고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 아동 및 취약한 성인이 셰이프가딩과 관련된 우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위협에 처한 사람과 신체적, 언어적,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부모나 다른 성인이 있는 자리에서는 편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주제나 어휘를 아동이나 청소년과 함께 논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승인된 다른 사람이 동행할 것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동이나 청소년과 함께 1박 여행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 상식적으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아동, 취약한 성인 또는 그 밖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나 착취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평가 예시

위험 평가 지침 및 양식^{viii}

아동,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기 전, 올바른 보호 관행의 일환으로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는 가장 적합한 담당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서면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에는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고, 검토 일정을 명시한 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활동이나 외출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위험 요소와 필요한 안전 조치에 대한 표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활동이나 외출에 적용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추가해 주십시오.

활동 또는 외출에 대한 안전 조치/위험 평가 단계:

- 위험 요소 파악
- 해당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
- 안전 조치가 이행되도록 책임지는 사람을 기록
- 완료일자
- 서명, 날짜, 검토 날짜를 기재하고 안전하게 보관

위험 평가 체크리스트	어떤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까요?	누가 책임을 지나요?	날짜
안전한 채용	<p>관련 직원/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채용 절차를 통해 철저히 신원 조사를 받았습니까?</p> <p>해당 직무에 필요한 경우, 관련 경찰 신원 조회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까?</p> <p>직원/자원봉사자들이 세이프가딩 교육을 이수했습니까?</p>		



위험 평가 체크리스트	어떤 세이프가딩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날짜
<p>교통편</p>	<p><input type="checkbox"/> 누가 교통편을 제공합니까?</p> <p>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p> <p>운전 기사는 안전한 채용 절차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었나요?</p>		
<p>인원 비율</p>	<p><input type="checkbox"/> 직원/자원봉사자 대 아동 비율.</p> <p>인원 배정을 결정하기 전에 아동이나 취약 계층 성인의 필요 사항과 해당 활동을 고려하십시오.</p>		
<p>동의서</p>	<p>외출과 관련된 동의서를 부모, 보호자 또는 적절한 사람이 작성했습니까?</p> <p>부모, 보호자 또는 적절한 담당자가 미디어 동의서를 작성했습니까?</p> <p>외출에 대해 부모, 보호자 또는 적절한 담당자로부터 제기된 이의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까?</p> <p>그룹 리더들이 비상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식단 관련 요구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 관련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장애로 인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까?</p> <p>의료적 요구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담당 의사의 연락처는 확보되었습니까?</p>		



위험 평가 체크리스트	어떤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까?	책임자는 누구인가?	날짜
보건 및 안전	<p>물리적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습니까?</p> <p>이러한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p>		
사진, 동영상, 휴대전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문자 및 이메일 등 소셜 미디어	<p>☐ 사진 촬영 동의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p> <p>기타 사진 촬영 및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p>		
보험	<p>해당되는 경우, 다음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p> <p>개인, 사업, 여행, 교통, 건물 및 상해 보험.</p>		
직원/자원봉사자에 의한, 또는 아동 간, 혹은 취약한 성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위험	<p>☐ 배정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까?</p> <p>아동/취약 성인의 특별 요구 사항이 준수되었습니까?</p> <p>직원/자원봉사자 채용이 완료되었으며, 경찰(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원 조회를 마쳤습니까?</p> <p>직원/자원봉사자가 아동 및 취약 성인 세이프가딩 교육을 이수했습니까?</p>		



위험 평가 체크리스트	어떤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까요?	누가 책임을 지나요?	날짜
기타 확인된 위험 요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름:.....

서명:

직책:

날짜:..... 검토 날짜:



안전 계획

이 안전 계획서 양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종교인을 위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대, 기타 형태의 피해 또는 범죄 행위로 고발된 경우
- 민법 또는 교회법상 조사 기간 중 사역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사법 재판 후 구금형에서 석방된 경우

합의서

본 합의서는와(과)(장상) 간에,(수도회)를 대표하여 체결됩니다.

본 합의는 본인과 해당 당사자가 거주하게 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아동 및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보다 넓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합니다.

정보 및 기밀 유지

다음의 사람들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적절한 경우 수정하십시오):

- 관구장/지역장
- 지역 장상
- 세이프가딩 담당자
- 수도회 변호사(해당되는 경우)
- 경찰/민간 당국
- 기타?

이들은 협약이 완전히 준수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돕습니다.

본 계약의 대상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거주지:

xxx는 다음 주소에 거주할 것입니다: _____

다음 날짜부터 xxx /xxx까지/가까운 미래 동안. xxx는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와 관련되거나 연관된

누구와도 어떠한 접촉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사 참여:

성체성사:

xxx는 ...에서 미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xxx는 xx 교회에서 또는 담당 고해 신부님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고해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 생활:

- xxx는 공동체 내에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 xxx는 상급자 및 지정된 지원 담당자와 원활하고 빈번한 연락을 유지할 것입니다
- 그는 아동 및/또는 취약 계층과 접촉하는 모든 사목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는 자신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는 학대/피해 또는 기타 범죄 행위에 연루된 다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공동체 기도가 공동체 구성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xxx도 참석할 것입니다

휴가/수련회/휴가 기간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관구장/지역장의 전적인 승인을 받아 이루어져야 하며, 장소와 기간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은 xxx와 소속 상급자 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xxx는 학대/피해/범죄가 발생한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 당국/경찰에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장:

xxx는 사목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상황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복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 담당자 (The Support Person)

xxx에게는 복음의 가치와 예수수도회(Congregation of Jesus)의 카리스마 및 회칙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지원 담당자가 배정될 것입니다. 지원 담당자는 xxx가 사목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원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xxx는 정기적인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는 지원 담당자가 아닌 다른 이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기타 요건:

xxx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안녕은 중요합니다.

- xxx에게 의료적 필요가 있을 경우, 이는 지역 장상의 승인을 받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치료 및/또는 외부 감독이 권고된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xxx는 해당 중독 치료 서비스, 세션 또는 모임에 참석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 xxx가 자살 충동을 표명하거나 암시할 경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로 의뢰해야 합니다



합의서 검토

본 합의서는 세이프가딩 담당자(Safeguarding Delegate)와 해당 상급자 및 필요에 따라 다른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최소한 연 1회 검토될 것입니다.

서명:

서명: 날짜 (필요에 따라 서명자 추가)

지원 담당자의 역할

피의자 종교인(an accused religious)에 대한 지원 담당자의 역할.

지원 담당자의 임명은 (피의자의 지위에 따라) 해당 관할의 관구장/지역장 또는 총장(General Superior)이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 피의자가 형사 수사 대상이 된 경우
-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성범죄 또는 기타 범죄로 체포되어 기소된 경우
- 자신의 소명과 양립할 수 없는 과거 이력이나 행동 양상으로 인해 사목 활동이 제한된 경우

지원 담당자의 임명은 안전 계획(합의서/계약서 또는 부과 명령)에 포함되며, 이는 각 개별 상황의 특수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정 및 조정됩니다.

지원 담당자 (The Support Person)

이 역할은 사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수도자나 평신도 남녀 모두 맡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임명은 당사자(피고인)와의 상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은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최종 결정권과 선택의 적합성 및 확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관구장/지역장에게 있습니다. 사제를 선택할 경우, 해당 주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자인 경우, 수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원 담당자(Support Person)의 자격

사제인 경우, 사제 서품을 받은 지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 주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도자인 지원 담당자의 경우에도 이와 동등한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평신도가 지원 담당자가 될 경우, 직업적, 개인적, 영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지원 담당자는 신뢰할 수 있고, 신중하며, 정직하고, 지혜로우며 이 임무에 적합한 후보자로 여겨져야 합니다.
- 지원 담당자가 세이프가딩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담당자는 훌륭한 사목적 소양을 갖추고 복음적 가치관의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 지원 담당자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자 연민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확고한 경계를 모두 갖춘 태도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과 자살 충동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담당자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든 세이프가딩 관련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 언제든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이해 상충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지원 담당자의 임무:

- 종교 상급자 (Religious Superior)와의 합의서에 서명하여 공식적인 약속을 해야 합니다
- 피의자가 공유해야 할 위험이나 보호 관련 우려 사항을 공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역할이 기밀 유지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모든 회의 및 접촉에 대해 전문적이고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며, 해당 기록은 예수수도회의 소유임을 완전히 인지해야 합니다.
- 이 약속을 6개월마다, 또는 필요한 경우 그보다 더 자주 검토하기로 합의합니다.
- 피고인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합니다.
- 합의된 범위 내에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 만남이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개최되도록 보장합니다.
-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예수수도회의 세이프가딩 담당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해야 합니다.
- 해당 개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범죄 행위를 자백할 경우, 예수수도회의 세이프가딩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만약 그러한 자백이 있을 경우, 피고인은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예수수도회가 해결할 수 있는 보호 및 안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들을 피고인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 피의자의 영적 생활과 기도를 격려하되, 영적 지도자나 (사제인 경우) 고해 사제로서의 역할은 맡지 않습니다.
- 요청이 있을 경우, 지지하는 입장에서 피의자와의 면담에 참석합니다
- 정기적인 외부 전문 슈퍼비전 회의에 참석합니다.
- 연례 전문성 발달 연수에 참석해야 합니다
- 전문적인 범위 내에서 상기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담당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업무

- 지원 담당자는 대상자(피의자)를 대신하여 발언하거나, 세이프가딩 담당자, 상급자, 민사 당국, 언론, 소셜 미디어 또는 기타 법적 체계와의 접촉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지원 담당자는 피고인의 ‘교회법 변호사’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필요한 경우, 피고인과의 협의 하에 교회법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담당자는 피고인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지원 담당자가 사제인 경우, 피고인의 고해사제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지원 담당자는 어떠한 옹호 역할도 수행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직접 보내진 통신이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보내진 통신에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 지원 담당자가 전문적인 치료 또는 정신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고인과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치료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지원 담당자 역할의 종료

지원 담당자가 어느 시점에서든지 자신의 역할 수행이 정서적 또는 심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담당자는 피고인에 대한 지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전 통지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 담당자에게는 사후 검토 및 피드백 세션과 최종 슈퍼비전 상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담당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전문적인 경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관구장/지역장은 해당 협약/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도회에서 온 수녀/수련자/양성 중인 자에 대한 고려 사항

수녀/수련자/양성 중인 이들이 본 수도회에 입회를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세이프가딩 관련)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a) 다른 곳에서 수련을 받았던

모든 수련자:

- 적절한 추천서
- 영적 지도 및 기도 생활에 대한 경험과 이해에 관한 정보
- 세이프가딩이 수도회 내 모든 구성원의 공동 책임임을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b) 타 수도회에서 온 수녀/수련자 대상

- 위의 모든 사항
- 심리 평가서



사진 촬영 동의서

사진 및 영상 촬영 동의서

xxxx 행사 기간 중 및 행사 종료 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인쇄물 및 온라인 홍보 자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xxxx 행사 기간 중 및 행사 후 홍보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 및 영상, 그리고 해당 이미지의 복제물이나 변형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모든 권리를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인쇄물 및 온라인 홍보물, 소셜 미디어, 보도 자료, X (구, 트위터) 계정 등 (이에 국한되지 않음) 에 이를 사용하는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름: 서명

날짜:

세이프가딩 정책 준수 서약서

예수수도회는 세이프가딩 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취약한 모든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문화를 함양함으로써 교회의 도덕적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저는 본 수도회 세이프가딩 정책 문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제 사도직 활동 내에서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을 돌보고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름: 서명

날짜:



용어 해설^{ix}

학대 - 교황청 미성년자 보호 위원회(PCPM)의 '보편적 지침 체계(UGF)' 문서 전반에 걸쳐 사용될 때, 이는 아동 학대와 성인 학대를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권력 남용 - 지위, 직책 또는 직무를 악용하여 타인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관계(예: 고용주와 피고용인, 교사와 학생, 코치와 선수, 부모 또는 보호자와 자녀, 성직자/종교인과 신자)에 의해 타인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접근성 높은 언어 - 영어 문해력 및 숙련도, 의사소통 방식, 언어, 인지 능력 수준이 각기 다른 개인들을 위해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 -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UGF 문서 전반에 걸쳐 사용될 때, 이는 취약한 성인을 포함한 모든 성인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성인 학대 -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를 실제로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성인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학대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학대, 방임, 상해, 폭행, 성폭행, 강간, 부당한 관행, 범죄, 착취 또는 기타 유형의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인 학대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주가 있습니다:

- + 성적 학대
-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심리적 학대
- + 방임
- + 노인 학대

- + 경제적 학대
- + 착취*

가톨릭 교회의 맥락에서, 영적 학대*를 학대의 또 다른 하위 유형으로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혐의 -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를 누군가가 저질렀다고 주장하거나 제기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불만 (complaint)”과 혼용되거나 함께 사용됩니다.

감사(Audit) - 교회 당국, 사목 부서 또는 교회 당국의 관할을 받는 교회 기구가 UGF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교 - 교구장 주교 (Diocesan Bishop) 이나 대주교 (Archbishop), 성직자치단 (Ordinariate)의 수장 (Ordinary)과 라틴 교회(Latin Church)에 속한 인적 성직자치단 (Personal Prelature)의 단장(prelate), 동방교회 (Eastern Churches)의 교구장주교 (Eparch)를 뜻합니다.



교회법 - 198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 공포한 개정 교회법, 1990년 공포된 동방 교회법, 그리고 관할 교회 당국이 공포한 그 밖의 모든 보편법 또는 법령을 의미합니다.

교회법상 범죄 - 성직자 및 수도자가 저지른 성 학대 관련 교회법상 범죄⁽¹⁸⁾를 의미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폭력, 위협 또는 권위 남용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사람¹⁹과 성행위를 하는 행위;
- +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전시, 소지 또는 배포(전자적 수단을 통한 경우 포함) 및 미성년자나 취약 계층을 모집하거나 유인하여 포르노그래피 공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Vos Estis Lux Mundi*』 제1조 제1항 a)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직자 또는 수도자가 저지른 행위.

아동 - 18세 미만의 개인을 의미합니다.

아동 학대 -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양합니다. WHO가 제시하고 호주 가족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에서 인용한 정의: <https://aifs.gov.au/resources/policy-and-practice-papers/what-child-abuse-and-neglect>

책임, 신뢰 또는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및/또는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또는 부주의한 대우, 상업적 또는 기타 형태의 착취. 아동 학대와 방임은 일반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심리적 학대
- + 방임
- + 성적 학대
- + 가정 폭력에의 노출 (exposure to family violence)

가톨릭 교회의 맥락에서, 영적 학대*를 학대의 또 다른 하위 유형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권위자 - 다음을 의미합니다:

- +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 성직자치단장, 라틴 교회의 개인 성직자치단장, 동방 교회의 교구장;
- + 명칭에 관계없이, 각 수도회의 헌장에 따라 통치 사목을 수행하는 관할 권위자;
- + 교회 내 공공 법인(Ministerial Public Juridic Persons)의 경우, 정관에 따른 관할 기관;
- + 또는 교회 단체 내의 다른 사목 부서의 규칙에 따라 해당 부서의 최고 교회 당국.



교회 단체 - 교회법상 가톨릭으로 인정된 교구, 수도회, 사목적 공법법인(그 산하 기관 포함) 또는 협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규정 - 가톨릭 교회의 업무를 규율하는 공식 절차 또는 규칙 체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Vos Estis Lux Mundi*』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적 기준 - 민사적 기준(증명의 기준)이란 사건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를 의미한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증명 기준이 존재합니다:

+ 가장 일반적인 증명 기준은 민사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가능성의 균형’(Briginshaw v Briginshaw 사건의 원칙을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인물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기준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입니다).

성직자 - 주교, 사제 및 부제를 포함합니다.

타국 출신 성직자 및 수도자 - 교회 당국이나 교회 단체가 해외에서 특별히 영입하거나 환영한 성직자 또는 수도회 회원을 의미합니다.

성직자 - 주교, 사제 및 부제를 포함한다.

성직자 중심주의 (Clericalism) - 성직자나 종교인에 대해 지나친 경외심을 보이며, 그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직자들이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백성들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제들 스스로나 평신도들에 의해 조장될 수 있습니다”.

인지 장애 - 특정 상태로 인해 기억력, 새로운 것의 학습, 집중력, 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뜻합니다.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인지 장애의 원인으로서는 치매, 뇌졸중, 뇌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해 상충 - 개인의 공무와 사적 이익 사이에 (지각되거나 실제적인) 갈등이 발생하여, 그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원칙이나 양립할 수 없는 소망 또는 필요를 수반하며, 직원이 여러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직 생활/성직 생활회 - 가톨릭 교회 내 신자들의 모임으로, 회원들은 서약이나 기타 신성한 결속을 통해 순결, 빈곤, 순종의 복음적 권고를 실천합니다(교회법 제573조~제730조에 정의됨).

수도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봉헌 생활을 개인적으로 영위할 수 있으며, 가톨릭 교회는 수도회 소속이 아닌 개인적 봉헌 생활의 형태로 은둔자와 봉헌된 동정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안전 - 이는 모든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공격이나 도전, 부정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이는 상호 존중, 공유된 의미, 공유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존엄성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생활하며, 일하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황청 부서 - 로마 교황청의 한 부서를 의미합니다.

위험을 감수할 권리 또는 존엄성 - 개인이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할 권리(또는 존엄성)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 자존감,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정 능력 저하 - 성인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과정의 어느 부분이라도(아래 나열된 바와 같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의 결정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 결정의 성격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
- +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 +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하는 것.

교구 - 라틴 교회의 교구, 대교구, 성직자치단 관구 또는 개인 성직자치단 관구, 그리고 동방 교회의 교구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장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타인과 동등한 기반 위에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2조)

다양성 -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 방식, 경험 및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성적 정체성 - 이러한 다양성을 구성하는 각 정체성, 행동 또는 특성을 일일이 명시할 필요 없이, 성 특성,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의 모든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노인 학대 - 신뢰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는 일회성 또는 반복적인 행위, 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학대 (성인) - 가까운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조작, 고립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서적 피해나 두려움을 유발할 의도로, 그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거나 통제하려는 행동이나 행위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학대로 정의됩니다.

정서적 학대 (아동) -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부적절한 언어적 또는 상징적 행위, 그리고/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동에게 적절한 비신체적 양육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나 방임은 아동의 자존감이나 사회적 적응 능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착취 - 타인에 대한 고의적인 학대, 조종 또는 권력과 통제의 남용을 말합니다. 이는 대체로 (항상은 아니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타인이나 상황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 폭력에의 노출 - 일반적으로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부모나 형제자매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또는 심리적 학대를 당하는 동안 아동이 그 자리에 있어 이를 듣거나 목격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에 가해진 피해를 직접 목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정적 학대 - 타인의 금전, 재산 또는 자원을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도, 사기, 위조, 횡령, 유언장 강제 변경, 거주자의 의사결정권 부당한 박탈, 위임장 남용 등은 모두 재정적 학대 또는 착취의 형태입니다.

양성 과정/프로그램 - 성직 서품이나 서원 선서를 준비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실천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평생의 여정을 견도록 개인을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양호한 상태 - 양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모든 보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형태의 혐의, 징계 절차, 제재 또는 정직 처분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루밍 (아동)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전 단계로서 아동을 유인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 패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아동과 '특별한' 우정/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루밍에는 부모나 다른 성인들이 해당 아동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도록 세뇌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루밍 (성인) - 타인을 고립시키고, 의존적으로 만들며, 신뢰하게 하고, 학대 행위에 더 취약한 상태로 유도하는 약탈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후견인 - 타인의 인격적 및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시설 내 학대 - 특정 시설이나 돌봄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또는 부적절한 돌봄을 의미합니다. 시설 내 학대의 가능한 원인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교회 공동체 내부의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투명성이 저해되는 점;
- +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연성과 선택의 여지가 부족한 점;
- + 직원의 신원 조회 및 면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 + 부적절한 교육;
- + 보호 정책 및 절차의 부재;
- + 경영진의 직원 지원 부족;
- + 부실한 감독; 및
- + 부실한 돌봄 기준.

평신도 - 주교, 사제, 부제 및 수도자를 제외한 가톨릭 교회 신자 및 교회 직원을 의미합니다.

지도자 - 교회 조직 내에서 중요한 운영 결정을 담당하거나, 교회의 발전 사업을 주도하고 조정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멘토 -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받는 조언자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경험이 적거나 젊은 사람에게 도움과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목 활동 (Ministry) - 공식적인 임명을 통해 승인되었으며, 가톨릭 교회의 사도적 및 자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교구 내에서의 활동 또는 교구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방임 (성인) - 보호자가 돌보는 대상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임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방임 행위에는 적절한 음식, 주거, 의복, 감독, 위생 또는 의료적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가해자 - 학대를 자백한 사람, 또는 법원(형사 또는 민사), 법령 또는 교회 절차에 의해 학대에 대한 책임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목적 돌봄 (Pastoral Care)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녕이나 신앙 공동체를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영적 조언과 지원, 교육, 상담, 의료적 돌봄, 그리고 필요할 때의 도움이 포함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감독이나 교육을 수반하는 모든 활동은 사목적 돌봄의 일입니다.

인력 (교회 인력) - 교회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 하도급, 자원봉사 또는 무급 형태로 활동하는 성직자, 수도자 또는 기타 인원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학대 - 신체적 고통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비우발적인 신체적 공격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신체적 강압 및 신체적 구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고의적일 수도 있고, 신체적 징계의 부주의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비 평가 - 혐의가 제기되면, 세이프가딩 담당자는 관구장/지역장과의 협력을 통해 피고발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발자가 혐의에 언급된 특정 사목 활동이나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지정된 시기에 CJ 학교나 로레토 학교의 학생이었던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전문적/사목적 수퍼비전 - 이는 담당자가 수퍼바이저의 지도 하에 성찰과 학습에 참여하는 전문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퍼비전은 담당자가 전문적 기준, 역할에 대한 정의된 역량, 그리고 교회 기관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이행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의 경우, 전문적 수퍼비전은 사목적 관계의 경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목 활동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보호 행동 프로그램 - 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돕는 연령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반성적 실천 -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전문성 개발 기법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개인이 경험을 탐구하여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의 역할(행동, 사고, 관련 감정 포함)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성적 실천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의 잠재적 변화를 식별함으로써,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수도회 (Religious Congregation) - 가톨릭 교회 내의 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이 서원을 통해 빈곤, 정결,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생활단 (Societies of apostolic life)은 회원들이 공동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수도회와 유사합니다. 이들은 수도 서원을 하지는 않지만, 단체의 사도적 목적을 실천합니다. UGF에서는 '수도회 (religious institute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도회, 사도생활단 및 재속 단체 (secular institutes)를 포괄합니다.

종교인 (Religious) - 봉헌 생활 단체 또는 사도적 생활 단체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검토(Review) - 세이프가딩 정책(Safeguarding Policy) 이행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 평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토는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 사항을 이행할 때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개선 과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 수준 분석 (Risk Profile) - 주요 세이프가딩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세이프가딩 위원회/팀 - 세이프가딩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역 차원의 연례 자체 감사 조정 등 세이프가딩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리더십 팀에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위원회/팀 구성원은 세이프가딩과 관련하여 연관 분야의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이프가딩 문화 - 예수수도회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세이프가딩을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성인은 자신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지원받을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이프가딩 서약서 - 아동과 성인을 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수도회의 약속을 기술한 서약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도회의 세이프가딩 문화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세이프가딩 코디네이터 (Safeguarding Co-ordinator) - 보호 활동을 주도하고, 수도회 내에서 UGF 및 지역 교회의 보호 프로토콜 이행을 조정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예수수도회의 경우, 이는 세이프가딩 담당자(Safeguarding Delegate)의 역할 중 일부가 됩니다)*

세이프가딩 실행 계획 - 예수수도회 전역에서 세이프가딩 관행이 확립되도록 취해야 할 조치들을 명시한 문서화된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조치, 전략, 책임, 권한 위임 및 책임 소재가 포함되며, 검토 및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이 계획은 세이프가딩 위원회/팀이 감독합니다.

세이프가딩 정책 및 절차 - 예수수도회의 아동 및 성인 보호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 채용;
- + 위험 관리;
- + 우려 사항 및 혐의; 그리고,
- +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의 적정 사용.

성 학대 (성인) - 성적 학대는 성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성적 학대에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및 성적 간섭이 포함됩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예: 치매)로 인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능력이 상실된 성인과의 성적 행위는 성폭행/성학대로 정의됩니다. 성폭행/성학대에는 폭력, 위협 또는 권력의 남용을 통해 개인이 교회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성폭행은 범죄입니다.

성학대 (아동) - 성학대는 성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성학대에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적 간섭이 포함됩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예: 치매)로 인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능력이 상실된 성인과의 성적 행위는 성폭행/성학대로 정의됩니다. 성폭행/성학대에는 강압, 위협 또는 권력의 남용을 통해 개인이 교회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성폭행은 범죄입니다.

영적 학대 - 타인의 종교적 신념과 신앙을 이용하여 해를 가하는 학대를 의미합니다. 영적 학대는 교회 내에서 영적 권위와 신뢰를 가진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학대를 저지를 때 이차적인 학대 경험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3자 - 예수수도회 외부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예수수도회와 서비스 및 시설을 계약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일시적 위험 -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서 사람들이 겪는 단기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유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인 경우:

- + 상실감
- + 사별
- + 관계 파탄
- + 노숙
- + 실업
- + 경제적 어려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피해자 중심의 지원 - 이는 다음 다섯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을 둔 강점 중심 접근 방식입니다:

- + 안전
- + 신뢰성
- + 선택권
- + 협력 및
- + 역량 강화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는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트라우마 반응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비난하거나 재차 트라우마를 유발하지 않으며,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과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에서는 트라우마 생존자를 그 경험에 대한 반응을 최선을 다해 관리해 온 고유한 개인으로 인식합니다.

취약 성인 - 학대를 경험할 위험이 높은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다음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 고령자
- + 장애가 있는 사람
- +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사람
- +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
- + 과거에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
- + 일시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 + 사역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권력 불균형에 처해 있는 사람
- + 원주민 및/또는 토착민으로 정체성을 밝힌 사람
- + 문화적·언어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
- +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
- +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기타 장애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무관용 원칙 (Zero Tolerance)’이란 교회 내 모든 형태의 학대, 부적절한 행위 및 방임에 대해 이를 예방하고, 신고하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개인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반영합니다.

‘무관용 원칙’은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성 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사목 직무 영구 박탈, 그리고 자비와 정의, 진실 추구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돌보는 사목적 접근을 의무화하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신성함을 보장합니다.

피해 생존자를 위한 안내문 작성 양식

이 양식은 각 기관의 상황과 자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전단지의 목적은 피해자가 해당 세이프가딩 담당자와 면담한 후, 제기된 혐의에 대한 처리 절차와 수도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지역 내 및 교회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용한 안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 감사의 말씀

당신이 겪은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와 주신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학대 혐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의무 신고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다음 단계

이제 절차가 시작될 것(또는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음)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피고발자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맞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움이 되신다면 가능한 한 자주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 담당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지난 면담에서 저희가 치료나 상담 비용을 지원해 드릴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적 지도와 같은 다른 형태의 지원 비용도 부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보상/구제: 지난 면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이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외부 자료

교회나 우리 수도회과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자료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이프가딩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 포함

피의자 사건 관리 체크리스트

양식

피의자 사건 관리의 각 상황에 대해 모든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이 순서대로 진행될 필요는 없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이 절차는 세이프가딩 담당자와 관할 관구장/지역장/지역 상급자가 각각 완료해야 합니다.

조치	예/아니오: 사유	서명 날짜 (및 직책)
피고인의 보호 및 관리		
피의자 사역에서 배제		
적절한 경우 피고인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		
피의자에 대한 지원		
안전 계획 합의 및 서명 완료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의 적절한 대응		
피의자의 가족 및 지인을 위한 지원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분리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학대가 발생한 환경에 대한 지원		

의무 신고	예/아니오: 사유	서명 날짜 (및 직책)
경찰/법정 당국에 신고된 혐의		
공동체의 장/ 관구장/ 지역장/ 총장에게 통보		
세이프가딩 담당자에게 통보		
세이프가딩 팀/위원회 회의		
기타 관련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통보		
철저한 기록 관리		
경찰과의 연락 담당자 지정		
예비 조사 개시 및 일시 중지		
교회법 자문		
법률 자문		
보험사에 통보		
주교/교구 세이프가딩 담당자에게 통보		

소통	예/아니오: 사유	서명 날짜 (및 직책)
미디어 성명서 작성		
언론 담당자		
공동체와의 소통?		
관구/지역과의 소통?		
다른 전달할 사항이 있나요?		
향후 계획	예/아니오: 사유	서명 날짜 (및 직함)
변호사		
금전적 보상		
재판?		
예비 조사 재개		

i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조

ii Vos estis lux mundi 2023

iii 보편적 지침 프레임워크 30쪽, 잠정판 2024

iv 2차 외상(Secondary Trauma)의 정의는 용어집을 참조하십시오

v 이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어집을 참조하십시오

vi 영국 웨일스 메네비아 교구가 정의한 학대의 유형

vii 2024년 3월 PCPM에서 발행한 UGF에서 발췌

viii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의 위험 평가서 양식 예시